

# 검토 보고서

2026. 4. 21.(화)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 1. 제출경위

- 제출자: 마포구청장(장애인복지과)
- 제출일: 2026. 4. 8.
- 회부일: 2026. 4. 15.(의안번호 : 26-35)

## 2. 제출이유

-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개별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지원)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2) 필요성

-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 1)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 2)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관리 일체
- 3)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

라. 위탁시설 개요

1) 소재지: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대흥실뿌리복지센터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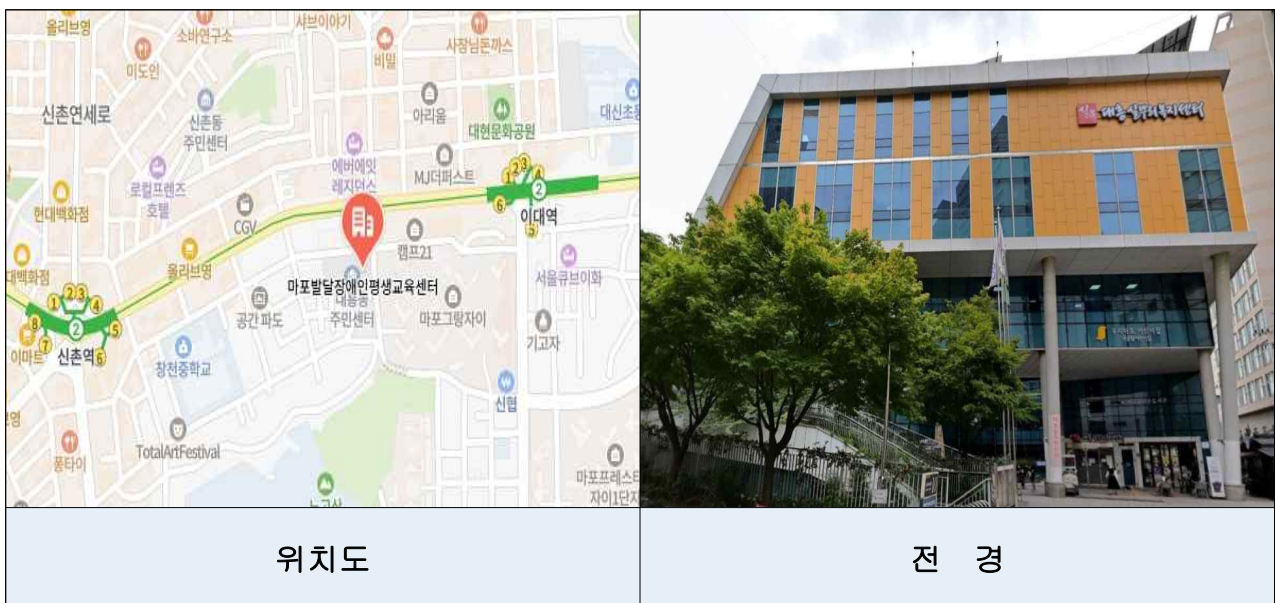
2) 시설현황

- 건물규모: 지하2층/지상5층(지상 3층 사용)
- 면적: 531.4 $m^2$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 전용 면적)

- 층별현황

층별	용도	면적(㎡)
5층	햇살정원(옥상공원), 자원봉사실, 경로식당 사무실, 조리실, 경로식당	703.01
4층	우리마포 데이케어센터, 미술활동실, 건강관리실, 종합상황실, 노인복지 사무실, 관장실, 음악활동실, 기능회복실, 세탁실, 창고, 특별활동실, 정보라운지, 청춘강당	1,407.48
3층	전문상담실, 스튜디오, 프로그램실, 재활체육실,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우리마포보호작업장, <b>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부모대기실</b>	1,538.74
2층	프로그램실, 마포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해오름작은도서관	1,128.66
1층	강당, 우리마포어린이집, 대흥동주민센터	1,524.45
B1층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 푸드마켓, 대흥동예비군동대	1,508.77
B2층	주차장	2,398.60

3)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전경

마. 민간위탁기간: 2026. 12. 20. ~ 2031. 12. 19.(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정(재위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6년 예산 기준)

1) 소요예산: 704,082천원(시비78%:구비22%)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목	세목			
계		704,082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704,082	-인건비: 676,026 -운영비: 28,056	시비 78% 구비 22%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지원)
- 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운영의 위탁)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나. 향후일정(안)

- 1)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성과평가 추진: 2026. 6월
- 2)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재위탁 계획 수립: 2026. 7월
- 3) 민간위탁 운영신청서 접수: 2026. 7월
- 4)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선정): 2026. 8월
- 5) 위탁 운영 개시: 2026. 12월

####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서울시) 준수하여 민간위탁 진행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개별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장애인복지과	김희선 (8880)	이승익 (1681)

## 참고 자료

### 1. 관련법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운영인력 및 내용

### □ 운영인력

○ 수탁기관: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대표: 김남연)

○ 직 원 수: 총 12명

(단위: 명)

시설명	계	센터장	팀장	교사	사무원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2	1	1	9	1

※ 전문강사(비상근) 총 10명: 방송댄스(1), 생활체육(3), 음악치료(2), 도예(1), 목공예(1), 형질공예(1), 그림(1)

□ 운영내용

○ 이용인원: 총 28명(남20명, 여8명)

구분	계	지적	자폐	중복장애					장애정도		
				계	뇌병변	시각	언어	뇌전증	계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소계	28	17	11	9	6	1	1	1	28	28	0
남	20	11	9	5	3	1	1	0	20	20	0
여	8	6	2	4	3	0	0	1	8	8	0

□ 추진실적

(단위: 연인원)

연도	계	교육						기본 공동 사업	지역 사회 개발	직원 교육	기타 프로 그램
		기초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찾아가는 생활체육				
계	36,170	4,061	8,793	32,821	16,955	23,209	525	46,374	964	874	6,868
2025	6,419	910	1,724	6,824	6,826	5,520	100	10,842	166	264	1,545
2024	6,518	467	1,730	8,298	5,084	5,628	118	11,554	241	218	1,407
2023	5,673	944	1,601	7,490	2,488	4,291	128	9,263	118	138	1,277